

재직기간 합산 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직기간이란?

연금법상 모든 급여를 산정할 때, 급여지급률을 결정하는 요소

퇴직급여 재직기간

기본 재직기간 + 가산기간 → 최대 36년 (33년 ~ 36년)

퇴직수당 재직기간

기본 재직기간 - 감축기간 → 최대 36년

■ 기본 재직기간

임용일이 속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연월수로 계산한 기간

■ 가산기간

합산기간, 임용 전 군복무기간, 소급통산 기간

재직기간 상한 (2015.12.31. 기준)

연금법 적용 공무원은 33년 ~ 36년까지만 기여금 납부

2015년말 재직기간	21년 이상	17년 이상 21년 미만	15년 이상 17년 미만	15년 미만
재직기간 상한	33년	34년	35년	36년

재직기간 합산이란?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 연금법 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더하여 합산하는 제도

■ 대상기간

공무원 임용 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합산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퇴직일 전날까지 신청)
-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본인이 신청
 - 인터넷 공단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연금서비스 → 재직기간 합산 → 합산 신청
 - 서 면 공단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합산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송부
 - * 팩스: 064-802-2844, 2834
 - * 우편: 제주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종전 경력을 합산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나요?



합산반납금 산정 및 납부

■ 합산반납금 산정

$$\text{퇴직급여액 (퇴직수당 제외)} + \text{급여이자 (급여지급월 익월 ~ 합산 신청한 달)}$$

■ 납부방법

- 일시납부: 공단 가상계좌로 다음달 말일까지 본인이 개별 납부
- 분할납부: 승인 다음달부터 기관 보수 지급 시 매월 공제
(분할납부 횟수 → 60회 이내에서 선택 가능) ※ 2024년 분할이자 이율: 4.0%

■ 합산반납금 미납

- 합산반납금 미납 연체이자: 연 8.0%(2024년 현재)
- 직권 취소: 합산반납금 6개월 이상 연체 시 직권 취소 가능
- * 합산반납금을 일부만 납부한 경우는 납부한 반납금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만 인정
- * 재직기간 변동에 따라 연금수급 대상 제외 및 연금개시연령 변경 가능

합산반납금 납부 예상액이 궁금하다면?

합산반납금 예측

주민등록번호	성명	재임용일자
합산재직기간	경력조회	

☐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 가산금

☐	퇴직급여수령연월	퇴직급여액	퇴직급여 가산금액 (*91.10.1 이전 임용된 경우만 입력)
☐			

※ 퇴직수당은 반납대상금액이 아닙니다.

※ 단 장기입대휴직복직자 및 공무원재임용일이 1991.10.01이전 임용자는 퇴직수당 반납대상입니다.

합산반납금 납부금액 계산

납부방법	분할납부	회	반납금계산	접수일자	2022-12-13
퇴직급여액(A)	0	급여이자(B)	일시반납금액(A+B)		
분할이자(C)		반납금금액(A+B+C)	매월납부액		최종납부액

※ 합산반납금 분할납부횟수는 최대 60회까지 가능합니다.

※ 합산반납금 납부금액 계산은 실제 심사 후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복지포털 → 연금서비스 → 재직기간 합산 → 합산반납금 예측
- 퇴직급여 수령연월, 퇴직급여액 (퇴직수당 제외), 납부방법 및 납부 횟수 입력 후 반납금 계산 클릭

합산 전·후 예상퇴직급여액 비교

합산 신청

주민등록번호	성명	소속기관명	접수번호	A-작성일자-일련번호
--------	----	-------	------	-------------

경력구분	☐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재직기간	~	조회	년	개월 (총재직기간)
급여종류	퇴직(연금)일시금	납부방법	선택	분할납부횟수	숫자 입력	※ 최대 60회까지 가능
군번	군번 입력	전역당시계급	계급 선택	군별	☐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합산신청구분	전체합산	취소개월수				

※ 연금관련 안내문 발송시 해당 주소로 발송되오니 우편물 수령이 원활한 주소지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택	선택	휴대폰	선택
이메일	@	직접입력	☐ E-mail 수신동의 여부
우편물수령 주소	우편번호찾기		
상세주소		우편물 수신여부	- 선택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 범죄경력, 병적사항 등을 공단이 취급,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합산 신청 이전에 가상합산을 통해 예상퇴직급여액 비교 가능
- 연금복지포털 → 연금서비스 → 재직기간 합산 → 합산 신청 → 합산 전·후 예상퇴직급여 비교 → 가상 합산 적용여부 체크 후 내역 조회하여 예상액 확인

유의사항

01 연금 합산시 합산 전·후 연금월액 비교 후 합산 신청

- 공무원 재임용 후 연금 합산 승인자의 연금월액이 합산 전 연금월액보다 감소하는 사례 발생하여 유불리 확인 필요
 - 연금 개시 이후 기간은 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24년 물가변동률 : 3.6 %)
 - 재임용 후 합산 시 재직기간은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24년 보수인상률 : 2.5 %)
- ※ 퇴직급여 예상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퇴직급여예상액 조회] 에서 확인 가능

02 합산 제외(취소) 및 재승인 신청 가능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퇴직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본인이 신청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연금서비스 → 재직기간 합산 → 합산 제외(취소) 신청, 합산 재승인 신청
 - 서 면 : 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재직기간 합산 제외 신청서,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송부

03 종전 경력 퇴직급여 수령에 따른 합산 가능 여부

- 사립학교 경력과 군인 경력은 퇴직급여(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미수령합산 불가하며, 해당 기관에 퇴직급여 수령 후 재직기간 합산 가능
- 공무원 경력은 퇴직급여 수령하지 않고 퇴직급여 재직기간 합산 가능하나,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 1년 이상일 경우 퇴직수당 청구 필요(1년 미만 청구 비대상)



◀ 합산 신청 알아보기



◀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공무원연금 관련 문의·상담은 **1588-4321**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